

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변경약정서

(파생상품거래용)

주식회사 하나은행 (이하 “은행”이라 한다)과 [] (이하 “고객”이라 한다)간 년 월 일에 체결한 ‘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약정서’의 제4조에 따라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를 증액하므로, 본 ‘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변경 약정서’를 다음과 같이 체결합니다. 변경 후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는 본 변경약정서의 체결일로부터 유효합니다.

제1조 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의 변경

[변경 전]

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_____ 원

[변경 후]

파생상품거래 손실한도 _____ 원

년 월 일

(고객)

주소 :

상호 :

(인)

(은행)

주소 :

상호 : 주식회사 하나은행

(인)

